

1.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정관 개정(안) 보고

□ 보고근거

-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(정관)제3항

③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시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 5. 16.>

□ 개정내용

- 정관 제37조(결산) 제2항 개정

- 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2(예산 및 결산의 제출 등)제2항의 개정예에 따라, 정관 내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조례와 일치시키고자 함

※ 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2(예산 및 결산의 제출 등)제②항
② 출자·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1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12.31.>

□ 향후계획(안)

- 시의회(보건복지위원회 제302회 임시회) 정관 개정(안) 사전 보고 : '21. 9월
- 이사회 정관 개정(안) 의결 및 서울시장 승인 : '21. 9월
- 보건복지부 허가 및 개정(안) 시행 : '21.10월

정관 개정(안)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7조(결산)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서를 당해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재단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·지출 결산서 1부 2.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 목록 1부 	<p>제37조(결산) ① <좌동></p> <p>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1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<좌동></p>